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We will open a safe, sustainable and future mobility era

안전

혁신

상생

공정

한국교통안전공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24. 08.

법 제9조제1항제1호	
조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 사례	감사처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고객소통처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민원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교통안전 교육처 3.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법무팀 4.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감사처 5. 공단 「감사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운영지원처 6. 「비상대비자원법」 제26조에 따른 공단 비상대비업무 관련 비밀 정보
	안전보건실 7.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관련 정보
	감사처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관련 정보
	항공안전처 9. 「항공안전법」 제61조 및 「항공보안법」 제33조의2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 및 항공보안 자율신고 접수 관련 정보
	운영지원처 10.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관련 정보
	교통물류 정책처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 유지) 및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실적자료 관련 정보
	법무팀 12.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제2호		
조문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운영지원처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운영지원처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 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보안처	3. 공단 내부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내부대책과 정책 문서 등이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공단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보안처	4.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발견된 취약점 분석·평가·조치 결과물, 훈련 계획(내용), 가이드라인 문서 등이 공개될 경우 외부 사이버 공격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정보
	교통물류 정책처	5.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대행」에 관련 사항으로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등 공개될 경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공단 관리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 대상 정보(운송회사 및 운전자 개인정보 외) 2) 운송계획정보(운전자정보, 위험물질종류, 운송계획 외)
	정보보안처	6.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운영지원처 자산인프라처	1.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또는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운영지원처	2. 인감 및 직인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안전보건실	3. 공단 사업별 유해위험사항 및 취약시설 정보가 포함된 문서로, 재난, 범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조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 사례	법무팀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법무팀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운영지원처 해당 검사소	3. 경비시스템 CCTV 위치, 장비명, 사진·동영상 등 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경비 및 시설방호와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조문 내용	<p>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 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적용 사례	<p>감사처</p> <p>1. 감사·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p>
	<p>감사처</p> <p>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청렴상담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p>
	<p>인재개발처</p> <p>3. 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및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단 임직원 채용·교육훈련·임직원 처우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 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p>
	<p>인재개발처</p> <p>4. 임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인사관련 제도개선 등 각종 제도·대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p>
	<p>재정회계처</p> <p>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p>

법 제9조제1항제5호		
적용 사례	재정회계처	6. 계약 추진 및 계약진행 절차(적격심사, 제안서평가 등)에 대한 업무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예산처	7. 공단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정원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공단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경영기획처	8. 공단 신규사업 검토·평가 및 사업 폐지 등 경영상 의사결정을 위해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혁신성과처	9. 공단 조직성과 평가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평가위원 등 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이 불가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항공안전처 운영지원처	10.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2)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 사업계획서 및 감축량 실적 등 내부검토 및 평가과정에 있는 정보 3)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

법 제9조제1항제5호		
적용 사례	운영지원처 인재개발처	11. 징계위원회·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2)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운영지원처	12. 공단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단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교통안전처	13.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감사처 인재개발처	14. 직원의 근무성적 및 다면평정, 역량평정·칭령도 평가 결과
	모빌리티 정책처	15.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자격관리처 철도안전처 항공자격처 드론자격센터 (화성, 김천)	16. 공단에서 주관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및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 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1) 국가자격시험(버스, 화물, 택시, 교통안전관리자)의 문제 및 상세 채점내역 등 2)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시험의 문제 및 상세 채점내역 등 3) 항공 및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시험의 문제 및 상세 채점내역 등

법 제9조제1항제5호		
적용 사례	교통물류 정책처	17.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대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계약 추진 및 계약진행 절차(적격심사, 제안서평가 등)에 대한 업무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 위험물질 단말장치 공급 통신사 공모 2)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3) 위험물질운송단속원 임명
	철도검사처	18. 철도용품 형식승인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형식승인 검사 과정에 있는 검사·검토 관련 정보 및 철도용품 제작사 등의 기술정보
	철도검사처	19. 철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결과 등 검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항공안전처	20. 공단이 주관하는 항공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자료, 시험문제관리, 교육교수 위촉 및 선정, 교육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등 업무의 공정성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항공안전처	21. 기내반입금지물품 선정을 위한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 정보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항공안전처	22. 항공장애표시등 검사관 정보 등 공개될 경우 검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도심항공 정책처	23. UAM(도심항공교통) 관련 제도 신설 및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중대사고 조사처	24. 제작결함조사 업무 관련 실차 현장조사, 각종 시험 및 회의 결과 등 내부검토 과정 중 공정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조문 내용	<p>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p> <p>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p> <p>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p> <p>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p> <p>라.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직위</p> <p>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p>
적용 사례	<p>고객소통처</p> <p>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인재개발처</p> <p>2. 특정 직원의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인재개발처</p> <p>3. 채용후보자의 부서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 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 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법 제9조제1항제6호		
적용 사례	감사처 인재개발처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인재개발처 자격관리처	5. 각종 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감사처	6. 직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인재개발처	7. 국가인재 DB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교통안전처	8.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포상금 비용 지급 시 소득신고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정보
	검사운영처	9.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에 저장되어 있는 본인 외 자동차 검사(인적사항 포함) 관련 정보
	교통물류 정책처	10. 녹색물류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녹색물류전환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련 사항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녹색물류전환사업 보조금 지원자의 개인정보 및 신청서류 일체 등 2) 친환경물류지원사업 위탁사업 관련 서류일체
	주차안전처	11.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이름 또는 연락처, 관리인 교육 수료자의 개인정보 등 개인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적용 사례	운영지원처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조사과정 상의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정보
	드론관리처	13. 초경량비행장치 기체 신고자의 성명 또는 연락처, 주소 등 개인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드론관리처	14.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전문교관(실기평가조종자, 지도조종자)의 성명 또는 연락처, 자격번호 등 개인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드론관리처	15.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조종자 성명, 자격증번호 및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드론관리처	16. 대학생 UAM(도심항공교통) 올림피아드 부문별 평가위원의 개인 연락처 및 자격정보 등 개인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중대사고 조사처	17. 제작결함조사 업무 관련 사항으로 자동차 등록정보, 소유주 개인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교통복지처	1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대상자에 대한 성명 또는 연락처,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보안처	19.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제7호	
조문 내용	<p>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p> <p>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p>
적용 사례	<p>예산처 인재개발처</p> <p>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p>
	<p>재정회계처</p> <p>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p>
	<p>재정회계처</p> <p>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기술승인처 중대사고 조사처 리콜정책처 부품연구처 자동차인증처</p> <p>4. 자동차 제작사 영업 관련 정보 등 공개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제원표 및 외관도 등) 관련 정보 2) 자동차 자기인증 관련 정보 3) 전기자동차 화재 원인분석(재현실험) 관련 정보 4) 튜닝 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튜닝업체)을 통해 접수된 튜닝 관련 정보 5)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고시 신청(장비 제원 및 부품 유통현황 등) 관련 정보</p>
	<p>주차안전처</p> <p>5. 검사확인증, 도면 등 안전도 인증정보 및 주차장 설치 리스트 등 주차시설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p>

법 제9조제1항제7호		
첨단검사 기술처	6. 자동차진단통합시스템(KADIS) 운영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제공받은 검사용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보	
중대사고 조사처	7. 제작결함조사 업무 관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작사의 기술자료(설계도면 및 변경 이력 등), 판매현황 및 불량률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모빌리티 플랫폼처	8.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의 특정 운수업체 운행기록(주행거리, 운송 수입금, 승·하차 시각) 등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자산인프라처	1. 공단 부동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